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4. 20 선고 2016나11344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4. 20 선고 2016나1134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합173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D

변론 종결 2017. 3. 9.

판결 선고 2017. 4. 20.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합173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1.

체결된 매매계약은 194,000,000원의 범위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 1) 원고는 2011. 10. 26.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보증금액 850,000,000원, 보증기한 2012. 10. 26.(이후 2014. 10. 15.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A이 전북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 채무를 원고가 신용보증하고,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A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손해금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 2) A은 2014. 4. 11. 전주지방법원에 2014회합1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6.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전북은행에 822,869,7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3) 원고는 A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15. "A은 원고에게 822,559,850원과 그중 818,814,39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A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이 사건과 분리되어 확정되었다.

나. A의 처분행위

A은 2014. 3.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 85,000,000원으로 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2014. 3. 31.자 매매를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다. A의 무자력 등

1) A은 2013년 125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14년 3월 말 기준 자산은 19,947,000,000원, 부채는 37,316,545,000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2) A은 위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라 2014. 5.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2014. 11. 11. 사업의 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 피고는 2014.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143,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10. 23. 무렵 가액은 194,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에서 10호증, 갑 13호증(별도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2014. 6. 2.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일자인 2014. 3. 31.에는 아직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행위 직후인 2014. 4. 11. A이 회생신청을 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약정에 터 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그때부터 2달이 지나기 전인 2014. 6. 2.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매매예약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인 F은 1994년부터 A에 입사하여 A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고, 이에 A은 2005년 10월경 F과 사이에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게 하다가 F이 원하는 시기에는 언제든지 경락가격 상당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 여부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은 신용보증약정이 있기도 훨씬 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매매예약체결 사실의 인정 여부 가) 갑 10호증의 1, 을라 2호증의 1, 을라 3호증에서 5호증, 을라 7호증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의 남편인 F은 1994. 3. 7. A에 입사한 이래 2003. 4. 18.까지 A에서 근무하며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 9. 1.부터 2014. 11. 1.까지는 피고를 A의 근로자로 등록하고 F이 계속 A에서 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은 2005. 10. 6. 담보권 실행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피고는 2006. 1. 10.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 ③ A 소유의 다른 부동산 대부분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처분행위 시까지 아무런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라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2005년 10월경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을라 1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B이 A의 대표이사인 점, B과 피고 또는 F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A과 F 또는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경락일 무렵 매매예약서 등 어떠한 서류도 작성된 바 없고, 매매예약금 등의 돈이 수수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 등이 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이 사건 처분행위 시까지 9년간 경과하는 동안 피고 또는 F이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으려고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흔적이 없고, 그러다가 A이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당시 급하게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 직후인 2014.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 무렵 피고의 자금 사정이 좋아져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A의 대표이사인 B은 자신의 부 G 소유의 주택에서 1999년경부터 피고와 F을 거주하게 하다가 위 주택에 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더는 위 주택에 살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와 F 등이 계속 살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이는바, F의 회사에 대한 기여를 참작하더라도 이처럼 장기간 거주지를 제공한 것으로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2005년 10월경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해행위의 성부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A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약정한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 당시 가액 상당인 85,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 중 5,000,000원은 피고(또는 F)의 미지급 급여 등과 상계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피고가 A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우선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올라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와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8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5,000,000원은 A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과 상계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피고가 2014. 4. 1. 및 2014. 4. 7. A의 계좌로 각 40,000,000원씩 나누어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4) 그러나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남편인 F은 1994년부터 A에 근무하면서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 당시 A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F과 부부관계일 뿐 아니라 G의 주택이나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해온 피고 또한 A의 자금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A이 회생신청을 하기 불과 11일 전에 이 사건 처분행위가 매매 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로 하여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10. 23. 무렵 시가가 194,000,000원인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시가도 위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리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85,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④ A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일에 전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⑤ F 또는 피고가 A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등은 5,000,000원을 초과함에도¹⁾ 피고는 매매대금 85,000,000원 중 5,000,000원만 미지급 급여 등과 상계하고, 나머지를 A에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A의 당시 자금 사정에 비추어 향후 미지급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받지 못한 급여 등이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A에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그리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선의의 제3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10. 23.경 가액은 194,0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의 가액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위 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다. 따라서 A과 피고 사이에 2014. 3. 31. 체결된 매매계약은 194,000,000원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남성민

판사최규연

판사송호철

별지

1)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피고는 A을 상대로 41,144,54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50398)을 제기하여 2015. 5. 19.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